

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4. 8. 8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4. 8. 10

다. 상정일자 : 제34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4. 8. 19) 상정,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시민과장 이태경)

가. 제안이유

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 시행('94. 7. 1)에 따라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의 거주자에게도 주민등록등·초본이 발급됨에 따라 중계민원 전용 공인사용 근거마련

나. 주요골자

“모사전송”을 “모사전송 및 전산처리망”으로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모사전송 또는 전산처리망으로 접수, 처리할 수 있어 본 조례의 개정으로 민원인은 타 관내의 증명을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현대과학 문명의 혜택이며 민원편의를 위한 제도라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(재석위원 12명중 전원찬성)